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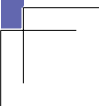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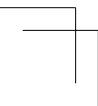


함께 만들어가는 구산동의 내일!

2025년 구산동 주민자치회 자치계획 결과보고서



구산동 주민자치회



2025년도 구산동 주민자치회 자치계획 보고서

Contents 목차



인사말 (회장님, 동장님)	2
1. 구산동 주민자치회 조직도	4
2. 구산동 주민자치회 구성 및 현황	5
3. 구산동 주민자치회 운영 경과보고	6
4. 구산동 주민자치회 감사보고	8
5. 2025년 구산동 주민자치회 사업보고	12
6. 2025년 구산동 주민총회 결과보고	28
7. 2025년 구산동 주민자치회 활동	35
8. 2025년 동 실행사업 소감나누기	42
별첨	
은평구 주민자치회 조례	45
구산동 운영세칙	54



회장님 인사말



정운호 구산동 주민자치회장

안녕하세요, 구산동 주민 여러분!
구산동 주민자치회장 정운호입니다.



2025년 을사년을 맞아 구산동의 성장과 발전을 꿈꾸며 달려왔는데,
어느덧, 제3기 주민자치회 1년 자치계획 활동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8개의 다양한 동 지역사업은 참여자들에게 함께하는 기쁨과 배움의 즐거움을 선사했으며,
특히 동 특화 사업 '구산동네아카이빙'은 「구산별곡」이라는 책자로 마을의 역사와 이웃의 삶을
담아냈습니다.

구산동 주민총회와 대축제를 한 9월 13일은 올해의 백미(白眉)였습니다.
비 소식에 조마조마했던 마음은 맑게 갠 하늘과 주민들의 함성으로 푸르게 빛났고,
주민들이 함께 만들어간 공연과 체험활동, 플리마켓, 먹거리 등은 경품추첨으로 더욱 열기를
더했습니다.

이 모든 추억과 성과는 주민 여러분과 주민자치회 위원들의 참여와 열정 덕분입니다.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마을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머리를 맞댈 때 우리는, 구산동의 행복한 내일을 꿈꿀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자치회는 주민 여러분과 함께하며 마을공동체를 위한 귀한 의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2025년 12월, 소중한 분들과 함께 위로와 감사의 시간 보내시길 바라며,
2026년 새해, 댁내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2025년 12월

구산동 주민자치회장

정운호

동장님 인사말



박재균 구산동장

구산동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산동장 박재균입니다.



2025년 한 해도 구산동 주민자치회와 함께 다양한 행사와 사업을
추진하며 어느 때보다 풍성하고 보람찬 시간을 보냈습니다.

에코골든벨과 숲그린(green)키즈 사업을 통해 아이들에게 자연의 가치를
일깨우고, 봄봄세탁소와 뷰티풀라이프-웰에이징 프로그램으로 어르신들의 건강과 일상에
활력을 더했습니다. 또한 거북마을 플리마켓, 다함께 빛고 굽고 도예체험, 구산동네아카이빙
'구산별곡' 등 세대가 함께 어울리는 소중한 순간들이 곳곳에서 피어났습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성과는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애정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올해는 동 축제와 주민총회가 함께 열리며 더 많은 주민을 직접 만나고 의견을 듣는 뜻깊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주민이 중심이 되는 마을의 힘을 다시금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구산동이 더욱 살기 좋은 마을로 도약할 수 있도록, 주민 여러분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가오는 2026년 병오년에도 말의 기상처럼 힘차고 활기찬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5년 12월
구산동장

박재균

1 구산동 주민자치회 조직도



2 구산동 주민자치회 구성 및 현황

주민자치회는 지역사회의 주민자치력 강화와 민·관 협력을 통해 해당동에 필요한 의제를 발굴하고, 실행함으로써 주민이 살기 좋은 행복한 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민주적 참여문화를 통해 마을에 개선하고 싶은 사항을 주민들과 함께 논의, 결정,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단체입니다.

♣ 주민자치회 위원 : 48명 (2025. 12. 1.기준)

계	성 별(명)		연 령 별(명)		단체, 개인 별(명)	
	남	여	40대 이하	40대 이상	단체	개인
48	19	29	8	40	16	32

♣ 주민자치회 임원진 현황 (2025. 12. 1.기준)

회장	부회장	감사	사무국	분과장	분과총무
정운호	공보영	한경훈 이진숙	이정숙 최윤실	자치회관운영분과 이영길 환경미래분과 채명화 미래시민교육분과 탁은정	최정숙 이동혁 박경숙

♣ 주민자치회 분과 현황 및 주요업무 (2025. 12. 1.기준)

분과명	주요업무	2025년 추진사업	사업비용	사업성과
자치회관 운영분과	자치회관 활성화 및 프로그램 기획 운영	▶ 거북마을플리마켓 ▶ 다함께 빛고 굶고 도예 체험 ▶ 시설사업: 수국이 있는 수국사	300만원 300만원 1,000만원	-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이웃 간 교류의 장 - 도예 프로그램을 통한 창작 및 정서 지원 - 테마가 있는 수국식재로 휴식과 힐링 제공
환경미래 분과	마을의 쾌적한 환경 및 지역경제 활성화	▶ 도전! 구산 에코골든벨 ▶ 숲그린(green)키즈	1,000만원 900만원	- 흥미진진한 퀴즈로 환경의 중요성을 배움 - 숲 생태 관찰 및 오감놀이로 자연과 친숙해짐
건강돌봄 분과	취약계층 및 주민의 건강과 복지사업 추진	▶ 봄봄세탁소(이불세탁) ▶ 뷰티플라이프 - 웰에이징 프로그램	600만원 800만원	- 이불세탁 서비스로 독거 어르신 건강 돌봄 - 다양한 웰에이징 프로그램으로 건강한 삶 제공
미래시민 교육분과	교육, 문화, 예술, 체육 등 청소년 및 주민 교육사업 추진	▶ 구산동네아카이빙 - 구산별곡	1,100만원	마을기록학교와 아카이빙으로 마을의 역사를 기록하고 이웃과 연결됨

3 구산동 주민자치회 운영 경과보고

시 기	운영내용	세부 운영 내용
2025. 1.	임원선출 및 정기회의	- 2025년 1월1일 제3기 구성 - 임원선출관리위원회 구성 및 임원선출 - 2025.1.16. 정기회의
2025. 2.	마을의제 발굴 및 사업실행	- 2025년 사업계획서 공유 및 자치계획 의결 - 분과재구성워크숍(분과구성 및 분과장, 분과총무 선출) - 분과실행사업 논의 및 마을의제발굴
2025. 3.~5.	2026년 마을의제 발굴 및 주민공론장 운영	- 운영세칙개정 준비위원회 구성 및 개정안 논의(2회) - 분과별 마을돌아보기 실시 - 2025.4.29. 주민공론장(1차) 운영 - 분과별 구체적 사업 실행계획 논의, 홍보, 모집
2025. 6.	발굴 사업 부서검토 및 결과 공유 동 지역 사업 실행 운영세칙 개정안 의결	- 부서검토 결과 공유(23건) - 동 지역사업 시작 - 1동 1대학 사업 추진(도시농부) - 2025.6.24. 운영세칙 개정안 의결
2025. 7.	주민총회 준비위원회 및 축제추진위원회 구성	- 2025.7.22. 주민공론장(2차) 운영 - 축제추진위원회 및 주민총회 준비위원회 구성 및 회의 - 2025.7.23. 자매결연 도시(장안면) 농산물 직거래 행사 - 2026년 참여예산 동지역사업 최종 결과(19건) - 자치회관운영분과 : 도예체험 사업 실행 및 종료(7.26.)
2025. 8.	주민총회 사전투표 및 홍보	- 축제추진위원회(2차) 및 주민총회 준비위원회 회의 - 사전투표 실시(8.25.~9.05.) 및 홍보
2025. 9.	2025년 주민총회 실시 2025년 동 축제 개최 동 지역사업 운영	- 2025.9.13. 주민총회 : 2026년 (동)지역사업 선정 - 2025.9.13. 동문화축제 : 거북마을 한울 대축제 - 건강돌봄분과 : 뷰티플라이프 종료(09.09.) - 환경미래분과 : 도전! 구산 에코 골든벨 종료(09.13.) - 자치회관운영분과 : 거북마을 플리마켓 종료(09.13.) - 동 지역사업 및 1동 1대학 사업 실행

2025. 10.	<p>분과사업 진행 주민자치회 워크숍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 지역사업(3개) 및 1동 1대학 사업 실행 - 2026.10.28. 주민자치회 역량강화 워크숍
2025. 11.	<p>분과사업 진행 및 마무리 주민자치회 지도점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미래분과 : 숲그린(Ggreen)키즈 종료(11.02.) - 건강돌봄분과 : 봄봄세탁소 사업 종료(11.22.) - 미래시민교육분과 : 책자 제작 완료(11.28.) - 동 지역사업 및 주민자치회 지도점검(11.20.) - 1동-1대학 사업 종료(11.22. 간담회 및 수료식 진행)
2025. 12.	<p>주민자치회 성과공유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평구 1동-1대학 성과공유회(12.02.) - 미래시민교육분과 : 성과보고회(12.03.) - 2025.12.16. 구산동 주민자치회 성과공유회



4 구산동 주민자치회 감사보고

감사종류	구산동 주민자치회 사업 및 회계 감사
감사대상	구산동 주민자치회
감사내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민자치회 조직과 운영내역 2. 주민자치회 각종 서류 및 회의록 3. 주민자치회 각종 회계 4. 주민자치회 사업 현황점검
조치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민자치회 조직과 운영내역 - 특이사항 없음 2. 주민자치회 각종 서류 및 회의록 - 특이사항 없음 3. 주민자치회 각종 회계 - 특이사항 없음 4. 주민자치회 사업 현황점검 - 특이사항 없음
종합의견	<p>2024년 실행사업은 사업계획에 따라 잘 진행되었으며, 분과위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로 잘 마무리 되었음.</p> <p>다만, 분과회의 시 마을의제발굴을 위한 논의가 부족했던 아쉬움이 있음.</p> <p>회계지출은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집행하였음.</p>

붙임. 1. 구산동 주민자치회 감사보고서 세부내용 1부. 끝

위와 같이 감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2월 6일

제출자 : 은평구 구산동 주민자치회 사업감사 (이 진 숙 (서명))

제출자 : 은평구 구산동 주민자치회 회계감사 (한 경 훈 (서명))

은평구청장 귀중

구산동 주민자치회 세부 감사보고

♣ 감사 개요



근 거

- 서울시 은평구 주민자치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
- 구산동 주민자치회 운영세칙 제14조

감사일시: 2025. 2. 06. 18:10

감사장소: 구산동 주민센터 3층 주민자치회 회의실

감 사 자: 이진숙 사업감사, 한경훈 회계감사

♣ 감사 내용

1. 주민자치회 조직과 운영

연번	감사내용	감사결과
1	정기회의	월 1회 네 번째 화요일 / 9회 실시 - 선거기간과 주민총회를 제외하고 매월 계획대로 진행함
2	운영진 회의	월1회, 두 번째 수요일 / 4회 실시 -1년 중 총 4회 진행으로 계획대로 운영되지 못함
3	분과회의	분과별 월 1회 실시 - 양호 2024년에 동 실행사업을 각 분과별로 진행함
4	사무국회의, 민관협력회의	필요시 상시 진행 - 양호 주민자치회 안건을 공유하며 진행함
5	주민총회 준비위원회	7월 29일 단 1회 진행함
6	주민총회 결과 정리와 주민공유	주민총회 후 게시판과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결과 공유함
7	자치회관 운영	선거와 9~10월 청사 보수공사로 인한 휴관으로 인해 수강생들의 불편함이 있었음

2. 주민자치회 예결산 및 회계상태

연번	감사내용	감사결과
1	예산수립, 자금의 수입, 지출의 적정성	적정함
2	사업계획에 의한 예산편성과 집행 여부	사업계획별 적정
3	예산편성시 모든 예산의 누락여부	해당 없음
4	주민자치회 명의를 전용통장 개설 및 사용 여부	보조금 통장 및 수강료 수납 통장 등 5개 계좌 모 두 전용통장 사용
5	주민자치회 예산의 목적 외 사용 여부	해당 없음
6	주요 회계장부 비치 및 통장잔액 일치 여부	일치함
7	수입원, 지출원 지정 여부, 신용보증보험 가입 여부	가입하였음

연번	감사내용	감사결과
8	자치회관 수입 등 유료 프로그램의 수입 누락 여부, 영수증 발급의 적정성 확인	적정
9	지출서류(증빙서류 등)의 적정성	적정하게 작성
10	예산의 허위성 지출 여부	해당 없음
11	소득세, 주민세의 원천징수 이행 여부	이행

3. 행정서류와 각종 문서, 장부 및 직인관리

연번	감사내용	감사결과
1	정기회의, 분과회의, 운영진회의 회의록 비치	양호
2	주민자치회 위·해촉 사임 대장	양호
3	직인대장과 문서대장	직인대장과 문서대장은 미비함
4	직인의 보관관리	잘 보관되어 있음
5	세무서 고유번호증 보관관리	잘 보관되어 있음
6	사업계획서 및 사업운영 필요서류	양호

4. 주민자치회 사업(주민세, 참여예산) 현황점검

연번	감사내용	감사결과
1	도시농부-가족과 함께 하는 힐링텃밭	- 매월 1회 농협대학교 강사의 실습교육 진행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텃밭운영이 가능했다고 판단됨. - 보증료와 수료증을 활용하여 참가자가 책임감을 가질 수 있었다고 판단됨.
2	봉산을 들고 보고 만지고 느끼는 미래세대	- 총 3회기 3 모둠으로 진행하여 많은 유아들이 참여하고 집중 있게 진행 할 수 있었다고 판단됨.
3	어르신들의 반찬 만들기	- 4월~10월 매월 2회, 총 10회차로 진행함. - 남성 어르신들이 집에서도 쉽게 만들 수 있는 레시피로 진행하여 만족도가 높았다고 판단됨
4	청소년 동아리, 청소년 모임활동을 지원하자	- 사업완료 후 책자 제작으로 1년간의 사업 내용이 잘 정리되어 있으며, 청소년들의 참여도가 높았음.
5	깨끗하고 안전한 등갯길 마을길~	보도정비와 울타리 설치로 깨끗하고 안전한 등갯길이 잘 정비되었음
6	수국이 있는 수국사	구산동 동특화사업으로 수국사뿐 아니라 무장애숲길 입구까지 확장해 수국을 심어 테마가 있는 구산동을 만드는 데 기여했다고 판단됨

5. 총평

사업감사

사업계획에 따라 모든 사업이 잘 진행되었으며, 분과위원 모두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한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주민총회에 상정할 좀 더 다양한 의제발굴이 이루어지지 못한 아쉬움이 있으며, 분과회의 시 의제발굴을 위한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회계감사

- 예산과목에 맞게 지출 증빙서류가 적정하게 작성되었습니다.
- 보조금 집행기준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집행되었습니다.
- 주민자치위원의 연회비를 수납하여 별도계좌로 운영하였고, 취지에 맞게 적정하게 사용하였으며, 특히 잔액 2,648,440원을 불우이웃돕기에 기부하여 타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 보조금 이외 수강료, 회비 등 지출내역도 결산서 또는 정산서를 작성하여 회계 책임을 명확하게 할 것을 권고합니다.

♣ 2024년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정산보고서

1. 정산 총괄표

(단위 : 원, %)

구분	예산액	지출액		집행잔액	이자 발생액
		금액	비율		
구비 보조	16,600,000	16,081,240	96%	518,760	9,777

2. 구비 보조금 집행현황

세부사업	통계목(예산액)	비목	실제 집행내역	집행액	반납액(잔액)
			세부내역		
주민자치회 운영·사업비	민간경상 보조금 4,250천원	일반 운영비	공과금	436,920	363,660
			사무관리비	229,800	
			분과구성 및 운영비	2,229,720	
		행사실비 지원금	식다과비	989,900	
		이자액			2,325
합계			3,886,340	365,985	
주민자치회 의제개발비	민간경상 보조금 12,350천원	일반 운영비	의제발굴	695,000	155,100
			주민총회	7,876,960	
			성과공유회	722,640	
		행사실비 지원금	의제발굴	1,843,900	
			주민총회	669,400	
			성과공유회	387,000	
이자액			7,452		
합계			12,194,900	162,552	

5 2025년 구산동 주민자치회 사업보고

♣ 2025년 주민자치회 예산 집행 현황

※ 2025. 12. 12. 기준

사업구분	항목	세부내역	금액(원)	집행금액	잔액	
합 계	총사업비		72,825,000	66,225,540	6,599,460	
주민자치회보조금	주민자치회 운영비 3,825,000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747,000	594,080	152,920	
		분과구성·운영 주민자치 역량강화	1,996,000	1,846,000	150,000	
		행사실비보상금 1,082,000	주민자치회 회의 운영 및 워크숍	1,082,000	855,000	227,000
	의제개발비 9,000,000원	행사운영비 6,320,000	의제발굴 홍보비	200,000	200,000	-
			주민총회 운영	5,620,000	5,620,000	-
			성과공유회 운영	500,000	350,000	150,000
		행사실비보상금 2,680,000	회의, 교육, 워크숍 등 운영	2,680,000	1,358,150	1,321,850
	(동) 지역사업 60,000,000원	1. 구산동네아카이빙-구산별곡		11,000,000	10,865,010	134,990
		2. 도전! 구산 예코골든벨		10,000,000	9,040,000	960,000
		3. 숲그린(green) 키즈		9,000,000	8,658,000	342,000
4. 거북마을플리마켓		3,000,000	2,830,000	170,000		
5. 봄봄세탁소(이불세탁)		6,000,000	4,564,000	1,436,000		
6. 뷰티풀라이프		8,000,000	6,885,000	1,115,000		
7. 다함께 빛고 굽고 도예체험		3,000,000	2,570,000	430,000		
8. 시설사업 공원녹지과 실행 완료		10,000,000	9,990,300	9,700		
1동1대학 10,300,000원	도시농부-가족과 함께하는 힐링텃밭		10,300,000	10,300,000	-	
자치회관	자치회관 운영 및 관리		17,497,500	15,182,910	2,314,590	

♣ 2025년 주민자치회 실행 사업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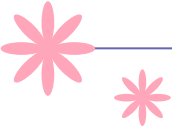




구산동네아카이빙-구산별곡

- ★ **실행분과**: 미래시민교육분과
- ★ **소요예산**: 11,000,000원
- ★ **사업내용**: 구산동의 역사를 기억하고 기록하는 프로젝트
- ★ **실행기간**: 2025. 3. ~ 11.
- ★ **수혜대상**: 은평구 주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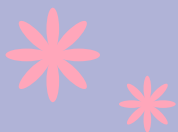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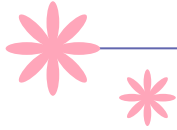




도전! 구산 에코골든벨

- ★ **실행분과**: 환경미래분과
- ★ **소요예산**: 10,000,000원
- ★ **사업내용**: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재미있게 배우는 퀴즈 프로그램
- ★ **실행기간**: 2025. 7. ~ 9.
- ★ **수혜대상**: 구산동 주민







숲그린(green)키즈

- ★ **실행분과**: 환경미래분과
- ★ **소요예산**: 9,000,000원
- ★ **사업내용**: 숲 생태 관찰 및 오감놀이로 자연과 친해지는 프로그램
- ★ **실행기간**: 2025. 9. ~ 11.
- ★ **수혜대상**: 은평구 유아·어린이



2025년 구산동주민자치회 실행사업
봉산 숲 생태 관찰 및 오감놀이로 친구랑 놀며 자연과 친해져요

즐거로운 숲 탐험 생활

숲그린(green)키즈 참여자 모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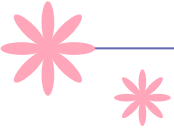
모집대상: 구산동 6~9세 어린이
모집인원: 6~7세 2모둠 각 20명 / 8~9세 2모둠(산학순)
모집기간: 2025. 9. 24.(수) ~ 10.14.(화)
신청방법: 방문신청(구산동 주민자치회 3층) 혹은 QR코드 접수
방문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방문시간 제외)
문의전화: 02) 351-4132, 351-4855

주제별 프로그램

모둠 1	모둠 2	모둠 3
즐거로운 곤충 생활 (6~7세)	즐거로운 거미 생활 (6~7세)	즐거로운 나무 생활 (8~9세)
2025. 10. 18 & 10. 19. 오전 10~12시	2025. 10. 25 & 10. 26. 오전 10~12시	2025. 11. 1 & 11. 2. 오전 10~12시

※ 연령대에 맞는 프로그램 1개만 선택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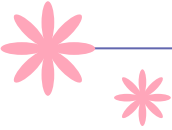




거북마을플리마켓(벼룩시장)

- ★ **실행분과**: 자치회관운영분과
- ★ **소요예산**: 3,000,000원
- ★ **사업내용**: 지역 활성화와 주민 화합을 도모하는 이웃 간 교류의 장
- ★ **실행기간**: 2025. 7. ~ 9.
- ★ **수혜대상**: 구산동 주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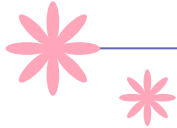




봄봄세탁소(이불세탁)

- ★ 실행분과: 건강돌봄분과
- ★ 소요예산: 6,000,000원
- ★ 사업내용: 취약계층 독거 어르신들의 이불세탁 서비스
- ★ 실행기간: 2025. 3. ~ 11.
- ★ 수혜대상: 구산동 독거 어르신





시설사업-수국이 있는 수국사

- ★ **실행부서:** 은평구청 공원녹지과(자치회관운영분과 지원)
- ★ **소요예산:** 10,000,000원
- ★ **사업내용:** 봉산 무장애숲길 초입, 수국사 일대에 수국 등 꽃·나무 식재
- ★ **실행기간:** 2025. 3. ~ 4.
- ★ **수혜대상:** 봉산 및 수국사 일대를 방문하는 이용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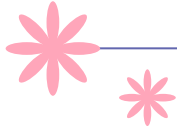




뷰티풀라이프-웰에이징 프로그램

- ★ **실행분과**: 건강돌봄분과
- ★ **소요예산**: 8,000,000원
- ★ **사업내용**: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웰에이징 프로그램
- ★ **실행기간**: 2025. 3. ~ 9.
- ★ **수혜대상**: 구산동 어르신(65세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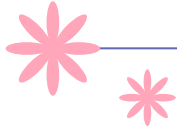




다함께 빛고 굽고 도예체험

- ★ **실행분과**: 자치회관운영분과
- ★ **소요예산**: 3,000,000원
- ★ **사업내용**: 스프링샤인과 함께하는 도예체험 프로그램
- ★ **실행기간**: 2025. 6. ~ 9.
- ★ **수혜대상**: 구산동 주민







2025년
구산동주민자치회 실행사업



다함께 빛고 굽고 도예체험

참여자 모집

발달장애인 창작지원 및 일자리 창출, 도예체험 프로그램

<p>모집대상 구산동 주민 누구나 ※ 초등학교 3학년 이하는 보호자 동반</p> <p>모집인원 선착순 30명</p> <p>모집기간 2025. 7. 1.(화)~7. 11.(금)</p> <p>신청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점심시간 제외)</p> <p>전화문의 구산동 주민자치회 ☎ 02-351-4132, 02-351-4855</p>	<p>도예체험 엔틱접시 만들기, 핸드페인팅</p> <p>체험일정 2025. 7. 19.(토) / 7. 26.(토) 각 오전 10~12시(총 2회)</p> <p>신청방법 방문신청(구산동 주민자치회 3층)</p>
---	---



6 2025년 구산동 주민총회 결과보고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주민총회)
- 구산동 운영세칙 「제3장 주민자치회 운영」 제28조(주민총회)

❁ 총회개요

일시 : 2025. 9. 13.(토) 11:00 ~ 12:00

장소 : 구산동 주민센터 지하강당

활동보고

- 2025년 구산동 주민자치회 구성 및 운영 보고
- 2025년 구산동 주민자치회 실행사업 진행 상황 보고

의결사항

- 2026년 동(洞) 지역사업 의제 설명
- 2026년 동(洞) 지역사업 투표 및 선정
- ※ 의결 정족수 : 154명 이상(2025년 7월 31일 기준 구산동 인구 30,744명의 0.5%)



❁ 투표경위

주민총회 투표 자격

구산동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거나 직장·단체·기관에서 활동하는 13세 이상 주민

투표기간 및 방법

사전투표

- 기간 : 2025. 8. 25.(월) ~ 9. 5.(금) 10:00~18:00

- 방법

- 사전 현장투표 : 구산동 주민센터, 구산역 등 구산동 관내 거점투표소 운영
- 사전 온라인 투표 : QR코드 또는 네이버 폼

주민총회 당일 현장투표 : 2025. 9. 13.(토) 11:00

※ 위 방법 중 1가지 방법으로 1회만 참여 가능



총회결과

참여 현황

(단위 : 명)

사전투표	현장투표	총계
696명 (8.25.~9.5.)	83명(스티커 투표) 200여명(찬반투표)	779명 (정족수 154명 초과)

상정 의제

구분	의제 제목	소요예산
프로그램 동특화	서로 돌봄 프로젝트	800만 원
프로그램 환경	소풍가는 플라마켓-은평의마을과 구산동이 함께해요	400만 원
프로그램 일반	구산 어르신 문화프로그램-경로당 행복학교	900만 원
	거북마을 명랑운동회-가족과 함께하는 우리동네 운동회	1,100만 원
	수채화로 소통하는 마을-물과 색으로 물들이다	400만 원
	어르신 반찬만들기 프로그램	1,000만 원
	두뇌튼튼 소통 한마당-장년층 보드게임 프로그램	300만 원
시설/환경	도로 빗물우수관 담배꽂초 방지막 설치	500만 원

투표 결과

구분	의제 제목	결과	
프로그램 동특화	서로 돌봄 프로젝트	선정(찬반투표)	
프로그램 환경	소풍가는 플라마켓-은평의마을과 구산동이 함께해요	선정(찬반투표)	
프로그램 일반	구산 어르신 문화프로그램-경로당 행복학교	1순위(441)	선정
	거북마을 명랑운동회-가족과 함께하는 우리동네 운동회	4순위(218)	
	수채화로 소통하는 마을-물과 색으로 물들이다	3순위(257)	선정
	어르신 반찬만들기 프로그램	2순위(402)	선정
	두뇌튼튼 소통 한마당-장년층 보드게임 프로그램	5순위(188)	
시설/환경	도로 빗물우수관 담배꽂초 방지막 설치	선정(찬반투표)	

♣ 소요예산

(단위 : 명)

구분	항목	산출근거	예산
주민 총회	행사운영비	「구산동 주민총회」 행사 운영용역 - 홍보물 디자인 및 제작 (현수막, 포스터, 리플릿, 배너 등) - 투표용지, 초대장, 봉투 등 제작 - 현장투표용 디자인 - 8가지 의제 및 단체사진용 현수막 - 참석확인용 핸드링 - 축하 공연팀 사례 - 수어통역사 사례 - 총회 영상 제작 - 사회자 단상 품보드, 바닥 방수포 등 - 기념품 제작비(3in1멀티충전케이블)	5,400,000
		소모성 물품구입비(문구류 등)	220,000
	행사실비 지원금	식비	252,000
총 계			5,872,000

♣ 평가

사전투표(온라인투표 및 사전투표소 방문 투표) 홍보를 통해 2025년 구산동 주민총회와 축제를 알리며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독려했음. 앞으로 더 폭넓은 연령대가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램.

각 분과 별 5개 거점을 나눠 사전투표소 운영을 하였으며 더위와 비바람 속에서도 분과위원의 참여와 봉사로 즐겁게 마칠 수 있었음.

총회 당일 200여 명의 구산동 주민이 모여 프로그램 일반은 1인 2표로 투표를 하였고, 동특화, 환경, 시설사업은 단독 후보로 찬반투표를 하였음.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원탁토론 방식이 아닌 아쉬움은 있었으나 시각적인 직접투표 참여방식으로 마을 축제 분위기를 연출하였음.

타 등과 총회 일정이 겹쳐 내빈들의 참석이 어려운 아쉬움은 있었으나, 총회의 주인인 구산동 주민의 참여와 호응으로 잘 마쳤음. 주민총회 후 이어지는 「거북마을 한울 대축제」에서 많은 손님을 맞이할 수 있었음.

총회사진



총회 홍보물

함께 만들어가는 구산동의 내일!

제5회 구산동 주민총회 & 제8회 거북마을 한울 대축제

2025.09.13. 토 10:00~16:00 구산동 주민센터 & 소공원

제5회 구산동 주민총회

일시 2025.09.13. 토 11:00~12:00
장소 구산동 주민센터 지하강당

참석대상
13세(2012년 9월 1일) 이상 구산동 주민
등록 혹은 구산동 소재 사업장 및
기관, 단체에 속한 사람

사전투표
2025.08.25 (월)~09.05 (금)
10:00~18:00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소

• 2025 주민자치회 활동보고
• 2026 참여예산 등 자치사업 의결

제8회 거북마을 한울 대축제

일시 2025.09.13. 토 13:00~16:00
장소 구산동 주민센터 주차장 옥실무대
대상 13세 이상 구산동 주민이면 누구나

주요 프로그램

- 문화공연
- 체험부스
- 먹거리부스
- 경품행사

도전, 해고 골든벨

일시 2025.09.13. 토 12:00~13:00
장소 구산동 주민센터 주차장 옥실무대
대상 사립, 예과생, 모듬생, 비과생, 관력생 /
기년생

거북마을 물리마켓

일시 2025.09.13. 토 10:00~16:00
장소 구산동 주민센터 앞 소공원
대상 구산동 주민 누구나
행사기간 08.25 (월)~09.05 (금) 10:00~18:00
참가비용 구산동주민자치회 1000원
(10팀 선착순)

문의 & 신청 구산동주민자치회 02-351-4132, 4855

구산동 주민총회

2025. 9. 13(토) 11:00
구산동 주민센터 지하강당

- 2025년 주민자치회 자치사업 활동보고
- 2026년 주민참여예산 총회(참여예산제)

문의 02-351-4132, 4855
구산동 주민센터 3층, 3차서회실

거북마을 한울 대축제

2025. 9. 13(토) 10:00~16:00
구산동 주민센터 주차장 옥실무대 소공원

이벤트 진행 순서
1. 10:00~11:00: 13세 이상 주민등록자 대상 주민총회
2. 11:00~12:00: 주민총회 휴회
3. 12:00~13:00: 도전, 해고 골든벨
4. 13:00~16:00: 거북마을 물리마켓

2026년 구분별 참여예산 총회(제8회) 자치사업

참여예산제 실시 10주년 기념행사

프로젝트형 사업 4회차 연회도

주요 목적
•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는 것

대상
• 구산동 주민이면 누구나

신청기간
2025.08.25(월)~09.05(금) 10:00~18:00

신청처
구산동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소개

1. 주민총회
2. 거북마을 물리마켓
3. 도전, 해고 골든벨
4. 주민참여예산제 총회

시민성 사업, 3회차 연회도

주요 목적
•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는 것

대상
• 구산동 주민이면 누구나

신청기간
2025.08.25(월)~09.05(금) 10:00~18:00

신청처
구산동 주민자치회

주민자치회란?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이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주민자치조직입니다.

주민자치회 구성
주민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 구성원 중에서 주민들이 선출하는 것으로, 주민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주민자치회 구성원에게 지휘·감독할 수 있습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구산동의 내일을 위해 주민의 소중한 참여가 중요합니다

2025. 8. 25(월)~9. 05(금) 10:00~18:00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소

사전투표
2025.08.25(월)~09.05(금) 10:00~18:00

투표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소

축제 배치도

구산동 주민센터 지하강당
구산동 주민센터 옥실무대
구산동 주민센터 앞 소공원

구산동 주민센터 지도

❁ 2025년 구산동 주민자치회 주민총회 투표용지



2026년 구산동 참여예산 등 지역사업 투표 용지

★우선순위 선호도 투표로 선정됩니다.

사업분야	연번	세 부 내 역			
동 특화 분야 의제 [찬성, 반대]			기표란 <input checked="" type="checkbox"/>		
프로그램 동 특화	1	서로 돌봄 프로젝트 [건강돌봄서포터즈 양성과정을 통해 안심하고 나이 드는 돌봄공동체 형성]	8,000,000원	찬	반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환경 분야 의제 [찬성, 반대]			기표란 <input checked="" type="checkbox"/>		
프로그램 환경	2	소풍가는 플라마켓 - 은평의마을과 구산동이 함께해요 [복지기관과 함께하는 자원순환과 나눔 실천으로 이웃과 소통의 장 마련]	4,000,000원	찬	반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일반 분야 의제 [5개 중 2개 선택]			기표란 <input checked="" type="checkbox"/>		
프로그램 일반	3	구산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 경로당 행복학교 [유익한 프로그램으로 정서적 안정과 사회적 관계망 형성]	9,000,000원	<input type="checkbox"/>	
	4	거북마을 명랑운동회 - 가족과 함께하는 우리동네 운동회 [놀이를 통한 세대 간 교류와 유대감 형성]	11,000,000원	<input type="checkbox"/>	
	5	수채화로 소통하는 마을 - 물과 색으로 마을을 물들이다 [그림을 통한 정서적 교감 및 소질 계발의 기회 마련]	4,000,000원	<input type="checkbox"/>	
	6	어르신 반찬 만들기 프로그램 [남성 어르신의 요리 배우기와 반찬 나눔으로 삶의 활력소 찾기]	10,000,000원	<input type="checkbox"/>	
	7	두뇌튼튼 소통 한마당 - 장년층 보드게임 프로그램 [주제별 보드게임으로 인지기능 및 사회적 향상]	3,000,000원	<input type="checkbox"/>	
시설 분야 의제 [찬성, 반대]			기표란 <input checked="" type="checkbox"/>		
시 설	8	도로 빗물 우수관 담배공초 방지막 설치 [빗물 우수관 거름망 설치로 하수도 막힘 방지 및 악취 개선]	5,000,000원	찬	반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개인정보 동의 : 주민총회 정족수 확인용, 중복투표 방지용으로 사용 (개인정보는 자료 확인 후 3개월 이내 폐기함)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비동의
---	---

▶ 필수 기재 사항 : 이름, 생년월일(투표 연령 확인), 주소

※ 누락 시 무효표 처리함

이 름		성 별	<input type="checkbox"/> 남 <input type="checkbox"/> 여
연 락 처	010 - -	생년월일	
주 소	<input type="checkbox"/> 구산동 거주 <input type="checkbox"/> 직장, 지역 단체 소속(생활 주민)		
	<input type="checkbox"/> 13세 ~ 19세 <input type="checkbox"/> 20대 <input type="checkbox"/> 30대 <input type="checkbox"/> 40대 <input type="checkbox"/> 50대 <input type="checkbox"/> 60대 <input type="checkbox"/> 70대 이상		
★ 2025년 7월 31일 구산동 인구 수 30,744명 기준, 154명(0.5%) 이상의 주민투표를 통해 사업 선정 - 최종결과 발표 : 9월13일(토) 13시 구산동 주민총회 / 은평구청 홈페이지 및 구산동 주민센터 게시판 공고 - 사업 선정 후 예산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자치회 정기회의에서 조정·결정합니다.			

❁ 2025년 구산동 주민자치회 주민총회 결과 공고문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산동 주민자치회 공고 제2025-02호

2025년 제5회 구산동 주민총회 결과 공고

2026년 실행되는 구산동 주민자치회 주민총회 결과를 공고합니다.

1. 주민총회 개최 개요

- 운영방식 : 대면 참석(동특화, 환경, 시설 : 찬반투표 / 프로그램 일반 : 1인 2표 투표)
- 투표방법 : 온라인투표 및 사전투표소 방문 투표 및 주민총회 현장투표
- 투표기간 : 1) 온 라 인 투표 : 2025.08.25.(월) ~ 09.05.(금)
2) 거점 사전투표 : 2025.08.25.(월) ~ 09.05.(금)
3) 총회 현장투표 : 2025.09.13.(토)
- 대 상 : 구산동 주민 누구나(투표권 : 13세 이상 주민, 생활주민)
- 참여인원 : 779명(온라인투표 15명, 사전투표 681명, 현장투표 83명)

2. 주민총회 투표결과

구 분	사 업 명	사 전	현 장	합 계	순 위
동특성화	서로 돌봄 프로젝트	563(92%)	과반수 ↑	92% ↑	승인
환경	소풍가는 플리마켓- 은평의마을과 구산동이 함께해요	627(92%)	과반수 ↑	92% ↑	승인
프로그램	구산 어른신 문화프로그램- 경로당 행복학교	387	54	441	1위
	어르신 반찬 만들기 프로그램 (남성 어른신의 요리 배우기)	361	41	402	2위
	수채화로 소통하는 마을- 물과 색으로 마을을 물들이다	234	23	257	3위
시설	도로 빗물우수관 담배꽂초 방지막 설치	634(94%)	과반수 ↑	94% ↑	승인

3. 주민총회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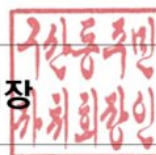


이상과 같이 구산동 제5회 주민총회 결과를 주민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주민총회 결과에 대한 문의 및 의견 제시는 구산동 주민자치회(02-351-485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9월 24일



구산동 주민자치회



♣ 제5회 구산동 주민총회 선정사업 (2026년 실행)

분야	연번	사업명	실행분과	예산액 (천원)
6개 사업				40,000
동 특화	1	서로돌봄 프로젝트 - 건강돌봄서포터즈 양성과정을 통해 안심하고 나이 드는 돌봄 공동체 형성	운영진	8,000
환경	2	소풍가는 플리마켓 - 은평의마을과 구산동이 함께해요 - 복지기관과 함께하는 자원순환과 나눔실천으로 이웃과 소통의 장 마련	환경미래 분과	4,000
프로 그램	3	구산 어른신 문화프로그램 - 경로당 행복학교 - 어르신들을 위한 유익한 프로그램으로 정서적 안정과 사회적 관계망 형성	건강돌봄 분과	9,000
	4	어르신 반찬 만들기 프로그램 - 남성 어르신의 요리 배우기와 반찬 나눔으로 삶의 활력소 찾기	자치회관 운영 분과	10,000
	5	수채화로 소통하는 마을-물과 색으로 마을을 물들이다 - 그림을 통한 정서적 교감 및 소질 계발의 기회 마련	미래시민 교육 분과	4,000
시설	6	도로 빗물우수관 담배꽂초 방지막 설치 (사업실행부서 : 치수과)	환경미래 분과	5,000



7 2025년 구산동 주민자치회 활동

2025

임원 선출



1월 정기회의

정기감사

운영진회의 7월



민관협력회의

분과재구성 워크숍

분과재구성 워크숍



분과재구성 워크숍

분과회의(자치회관운영)

분과회의(미래시민교육)





마을돌아보기



마을돌아보기

주민공론장

주민공론장



연합워크숍



주민공론장 2차

주민공론장 2차

자매결연지





총준위 1차



총준위 2차



축제추진위 2차



사전투표



사전투표 개표



역량강화 워크숍 1



역량강화 워크숍 2



역량강화 워크숍 3



역량강화 워크숍 4



역량강화 워크숍 5



역량강화 워크숍 6



❁ 구산동 활동사진_1동1대학





♣ 구산동 활동사진_한울 대축제





8 2025년 동 실행사업 소감나누기



거북마을플리마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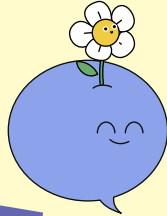
판매상품의 다양함과 좋은 품질, 싼 가격으로 주민들이 만족도가 높았어요

자치회관운영분과

- 좁은 장소여서 부산스러움도 있었지만 참가한 사람이 많아 보였어요.
- 장소의 협소함을 우려했으나 소공원의 운치와 다양한 상품으로 좋은 평가를 얻었어요.
- 껌배기와 옥수수를 판매하였고, 껌배기 판매가 인기와 수익 면에서 좋았어요.
- 참가한 셀러들의 친절함과 적극적인 참여가 인상적이었어요.
- 분과위원들의 협조와 의기투합으로 즐거운 하루였습니다.

거북마을플리마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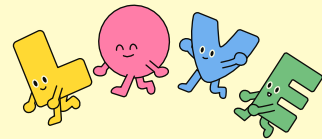
자치회관운영분과



다함께 빛고 굽고 도예체험

-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었고, 가족과 함께 빛는 모습이 보기 좋았어요.
- 스스로 만들어 구워져서 나온 완성품을 보니 뿌듯했어요.
- 스프링샤인 강사님들이 친절했고 미술수도 흥미로웠어요.
- 어린이와 어른을 분리하여 수업 내용을 달리해도 좋을 거 같아요.
- 흙으로 직접 도자기를 만드는 체험도 하고 싶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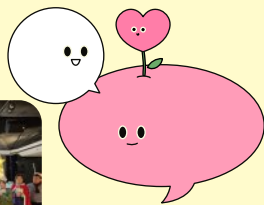
자치회관운영분과



도전! 구산 에코골든벨 / 숲그린(green)키즈

- 남녀노소 함께 한자리에 모여 화합의 장이 되는 퀴즈 시간이었어요.
- 환경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돌발퀴즈로 은평구와 구산동에 대해 알 수 있는 재밌는 시간이었어요. 다만 참가상도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았어요.
- 숲속 체험을 하며 아이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뿌듯했어요.
- 자연과 교감하며 숲속 놀이와 주제별 학습을 하는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 모둠별로 1차시 놀이 수업 내용이 같았는데 좀 더 다양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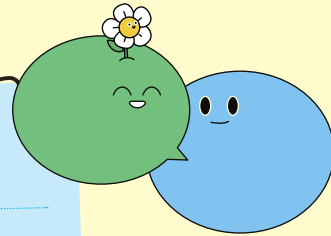
환경미래분과



봄봄세탁소 / 뷰티플라이프-웰에이징 프로그램

- 분과회의를 통해 의견을 모으고 위원들과 사무국의 지원으로 잘 진행되었어요. 다만 사업을 실행할 때 분과위원의 참여가 저조해서 아쉬웠습니다.
- 취약계층 어르신을 위한 봄봄세탁소와 65세 이상 어르신을 위한 웰에이징 프로그램은 동 주민들을 위한 좋은 사업이었어요.
- 특히 뷰티플라이프 프로그램은 기획 의도대로 딱 찬 구성이었고, 참여자들의 참여율과 만족도가 높았어요. 일부 강의는 주민자치위원의 재능기부로 소통하기에 더 좋았습니다.

건강돌봄분과



구산동네아카이빙-구산별곡

- 책 만드는 과정에 단계가 많아 힘들고 피곤했지만 보람된 시간이었어요.
- 마을공동체에 대해 생각하는 계기가 됐고, 마을에 대해 많은 것을 알게 되었지요.
- 위원들과 관계가 돈독해졌고, 인터뷰 활동을 통해 주민들과 연결되는 시간이었어요.
- 글을 쓰며 삶을 회고하는 시간이 되었고, 마음에 위로와 보상받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미래시민교육분과





01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02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산동 주민자치회 운영세칙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행정국 자치행정과)

제정) 2013.09.26 조례 제 962호
(전부개정) 2018.09.27 조례 제1231호
(일부개정) 2019.07.18 조례 제1275호
(일부개정) 2020.07.09 조례 제1351호
(전부개정) 2021.12.09 조례 제1480호
(일부개정) 2023.07.03 조례 제1588호
(일부개정) 2024.05.02 조례 제1670호
(일부개정) 2024.11.07 조례 제1712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에 따라 풀뿌리자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와 「지방자치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동에 두는 자치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동에 설치되고 주민을 대표하여 주민자치와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2. “주민자치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란 해당 동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3. “주민총회”란 제8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하여 주민자치 활동과 자치계획 등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 공론장을 말한다.
4. “자치계획”이란 동 주민자치 및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종합계획
5. “자치회관”이란 제1조의 목적을 위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동에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편의시설과 그에 포함된 프로그램을 총칭한다.

제3조(운영원칙) 주민자치회와 자치회관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
3. 동별 자율적인 운영
4. 정치적, 종교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 2 장 주민자치회의 설치

제4조(설치) 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할 지역의 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의 명칭은 “OO동 주민자치회”라 한다.

제5조(기능)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40조 및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참여위원회 및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4. 5. 2.>

1.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치계획 등을 세우고 이를 자체적으로 이행하는 업무
2.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동 행정사무의 협의
3. 자치회관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동 행정사무의 수탁 업무
4. 주민자치회의 자율적인 조직과 운영을 위한 업무
5. 동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관한 업무
6.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참여위원회와 연계가 필요한 업무
7. 그 밖에 주민의 자치소양 강화를 위한 교육 운영 등 위 각 호에 준하는 것으로 자치 활성화와 민관협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업무

제6조(정원) 위원의 정원은 50명 내외로 한다.

제 3 장 주민자치회의 위원

제7조(위원선정관리위원회) ① 위원의 선정 절차 수행 및 관리 업무를 위하여 해당 동에 위원선정관리위원회(이하 “선정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② 선정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5명 이내로 구성하며, 동장이 위촉한다.
 1. 동장 추천자 2명 이내
 2. 관내 직능·교육·문화·예술·그 밖의 지역단체 추천자 3명 이내
- ③ 선정관리위원회를 구성할 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④ 선정관리위원회에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두며, 선정관리위원회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 ⑤ 선정관리위원회는 위원 위촉이 완료될 때까지 존속한다.

제8조(위원의 자격) ① 위원은 모집 공고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해당 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3. 해당 동에 소재한 각 급 학교, 기관, 단체에 속한 사람
4.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해당 동외의 외국인 등록 대장에 올라있는 사람
- ② 위원은 구청장이 인정하는 주민의 자치소양 강화를 위하여 운영하는 교육(이하 “주민자치학교”라 한다)을 위원 선정 전 6시간을 이수한 사람이어야 한다. 주민자치학교 이수의 유효기간은 임기 내로 한다.
- ③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1. 국회 또는 지방의회 의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
 2. 서울특별시 은평구 소속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
 3. 선정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중인 사람
 4. 다른 주민자치위원회 및 주민자치회의 위원으로 위촉 중인 사람
 5. 제13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의 사유로 해촉된 사람으로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6.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

제9조(위원의 위촉) ① 구청장은 선정관리위원회가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한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한다. 다만, 제6항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 ② 선정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이 될 사람을 공개추첨하고, 각 호별 예비자를 순위를 정하여 공개추첨한다.
 1. 정원의 100분의 60이상은 공개모집에 신청한 사람

2. 정원의 100분의 40이하는 해당 동 소재 주요 기관 및 단체, 그 밖에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주민조직 등에서 추천한 사람

- ③ 주민자치회를 구성할 때 40대 이하가 100분의 15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④ 선정관리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추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추천된 사람의 명단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⑤ 구청장은 제4항의 명단 접수 후 20일 이내에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 ⑥ 구청장은 위원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 예비자가 있으면 그 순서대로, 예비자가 없으면 제2항에 준하여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위원을 위촉하거나 제2항에 해당하는 결원의 경우 운영세칙에 따라 선정관리위원회에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전임자가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일 때는 위촉하지 아니한다.
- ⑦ 동장은 위촉된 위원의 주요 인적사항을 그 위촉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공고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 ⑧ 해당 동에서 선출된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해당 동의 당연직 고문이 되고, 비례대표로 선출된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거주지 동의 당연직 고문이 된다. 다만, 고문은 주민자치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갖지 않는다.
- ⑨ 그 밖에 위원 위촉 및 주민자치회 구성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추첨 없이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② 제1항에 의하여 연임하는 위원은 임기 중 주민자치학교 교육과정 또는 사전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주민자치교육을 4시간 이상 이수한 자에 한정한다.

제11조(위원의 대우) ① 위원과 분과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② 위원에게는 은평구 지역소식의 원활한 전달을 위해 지역신문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 1. 폭넓은 의견수렴과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통한 주민자치회 운영
- 2. 제18조에 해당하는 회의 및 활동 참석
- 3. 1개 이상 분과위원회 참여 및 활동
- 4.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된 각종 교육, 연수 등에 적극 참여
- ② 위원은 특별법 제40조제5항에 따라 정치적 중립 의무를 가지며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개정 2024. 5. 2.>
- ③ 위원의 주민자치회 활동은 공익실현의 목적에 적합하여야 하며, 사익을 추구해서는 아니된다.

제13조(위원의 해촉)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 해촉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 5. 2.>

- 1. 위원이 제8조제1항의 자격 요건을 위배하거나 상실하게 된 경우
- 2. 위원이 둘 이상의 주민자치회의 위원으로 선정된 경우
- 3. 위원이 선거운동을 하거나, 특별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경우
- 4. 위원 스스로 사퇴를 밝히고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
-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을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해촉할 수 있다.
- 1.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권한을 남용한 경우
- 2. 직무태만 또는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지 못하는 등의 각종 사유로 위원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의무를 지속적으로 다하지 않은 경우

- ③ 위원에게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주민자치회에 해당 위원의 해촉을 발의할 수 있으며, 주민자치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구청장에게 그 위원의 해촉을 요구할 수 있다.

제 4 장 주민자치회의 운영

제14조(주민자치회의 장) ① 주민자치회는 회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 1명과 부회장(이하 “자치부회장”이라 한다) 1명을 두며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2명 이상 경쟁 시 무기명투표에 따라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에 다수 득표자를 선출한다.

- ②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며 주민자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③ 자치회장과 자치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④ 자치부회장은 자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하며 자치회장 결위 시 신임 자치회장 선출 시까지 자치회장직을 수행한다. 다만, 자치회장 및 부회장의 사임, 사고 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주민자치회의 의결로 자치회장 및 부회장을 재선출할 수 있으며 이들의 임기는 전임 회장 및 부회장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5조(감사) ① 주민자치회는 회계와 사업 집행을 감사하기 위하여 감사를 2명 이내로 두며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 외부인을 감사로 임명할 수 있다.

- ② 주민자치회는 감사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간사 또는 사무국)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또는 주민을 간사로 선임 또는 호선하거나, 사무국을 설치하여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 ② 자치회장은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두어 간사를 보조하게 하거나 사무국에 배치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의한 사무국을 설치하는 경우, 근무자의 배치, 수행업무 등 사무국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운영 세칙으로 정한다.
- ④ 자치회장은 제1항에 따른 간사 및 사무국 근무자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제2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분과위원회) ① 주민자치회 활동을 강화하고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분과위원회는 주민자치회 위원과 제8조제1항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 ③ 분과위원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2명 이상 경쟁 시 무기명투표에 따라 재적분과위원 과반수 출석에 다수득표자를 선출한다.
- ④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각종 활동, 사업계획 수립, 결속력 강화 등 운영 전반을 총괄한다.
- ⑤ 그 밖의 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한 운영세칙에 따른다.

제18조(회의) ① 주민자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하며, 정기회의는 월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동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자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개최한다. 다만, 정기회의는 주민자치회 의결을 거쳐 격월로 개최할 수 있다.

- ② 자치회장은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위원들과 동장에게 회의 개최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 ③ 주민자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동장은 주민자치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주민자치회는 동장 또는 동의 관계 공무원에게 회의에 출석하게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⑤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월 1회 이상 개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자치회 의결을 거쳐 격월로 개최할 수 있다.
- ⑥ 그 밖의 회의 개최 등 주민자치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정기회의 또는 임시회의 의결을 거쳐 자치회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9조(주민총회) ① 주민총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정족수 등 주민총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동별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다만, 필요시 주민자치회 의결에 따라 주민총회 개최 여부 및 개최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 ② 주민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
 1. 주민자치회 활동 평가
 2. 자치계획의 결정
 3. 참여예산사업 및 주민세환원사업의 제안, 선정
 4. 그 밖의 지역현안, 주민자치, 민관협력 등에 관한 사항의 보고와 결정
- ③ 주민자치회는 주민참여와 숙의를 촉진하기 위하여 주민총회 개최일로부터 1개월 전부터 총회 안건의 홍보, 주민설명회, 의견수렴 등을 진행하여야 한다.
- ④ 주민자치회는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주민합의를 형성하기 위하여 주민총회 안건에 관한 사전투표를 진행할 수 있다.
- ⑤ 구청장 및 동장은 주민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주민자치회는 관계 공무원에게 주민총회에 출석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⑥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 상정 안건 홍보를 위한 물품을 제작하여 주민총회에 참여한 주민에게 배포할 수 있다.

제20조(주민자치협의회) ①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정보교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협의·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자치협의회(이하 “협의회”라고 한다)를 둘 수 있다.

- ② 협의회 세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 5 장 자치계획

제21조(자치계획의 수립 및 결정) ① 주민자치회는 동 주민의 의견과 요구를 수렴하여 자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구청장은 자치계획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지원하여야 한다.
- ③ 자치계획은 주민자치회 정기회의 또는 임시회의 의결로 입안되며 주민총회에서 보고 및 결정한다.
- ④ 주민자치회는 자치계획을 결정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자치계획을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구청장은 이를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검토 및 반영 여부를 주민자치회에 전달해야 한다.
- ⑤ 자치계획은 다음 주민총회에서 새로운 자치계획을 수립할 때까지 효력을 갖는다.
- ⑥ 자치계획 실행과 홍보를 위해 홍보물품 및 기념품을 제작하고 배포할 수 있다.

제22조(자치계획의 구성) 자치계획은 다음 각 호의 세부 계획으로 구성한다.

1. 주민자치회 운영계획
2. 동 행정사무 협의 및 수탁업무 추진계획
3. 자치회관 운영계획
4. 분과별 사업계획
5. 참여예산사업 및 주민세환원사업 계획
6. 그 밖의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계획

제 6 장 자치회관

제23조(설치 등) ① 자치회관은 동 주민센터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동의 관할 구역 내에 있는 다른 시설 및 공간을 자치회관의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② 자치회관의 동별 명칭은 ○○동 자치회관으로 한다. 다만, 갈현제1동과 응암제1동은 ○○동문화의집으로 한다.

제24조(기능) ① 자치회관은 주민자치기능 및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편익기능을 수행하며 그 기능을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문제토론, 마을환경가꾸기, 자율방제활동 등 주민자치기능
2. 지역문화행사, 전시회, 생활체육 등 문화여가기능
3. 건강증진, 마을문고, 청소년공부방 등 지역복지기능
4. 회의장, 알뜰매장, 생활정보제공 등 주민편익기능
5. 평생교육, 교양강좌, 청소년교실 등 시민교육기능
6. 내집앞청소하기, 불우이웃돕기, 청소년지도 등 지역사회진흥기능

② 제1항의 기능 중 해당 동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또는 제6호와 관련된 기능은 우선적으로 갖추어 수행할 수 있다.

제25조(시설 및 프로그램) ① 구청장은 자치회관이 제24조에 따른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동에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이하 “시설 등”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시설 등의 종류와 내용, 그 변경 등은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정하되, 동별 특성,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조정할 수 있다.

③ 자치회관의 시설 등을 정함에 있어서 사전에 해당 동의 관할구역 또는 인근지역의 유사시설 등의 운영실태를 충분히 파악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동 주민센터가 협소하거나, 임차한 건물, 그 밖에 재정형편상 시설 등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재정계획이 포함된 연차별 시설 등의 설치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제26조(운영) ① 자치회관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이하 “자치회관의 운영”이라 한다)은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한다.

② 동장은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소속공무원, 주민자치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자치회관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담 또는 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주민자치회는 제2항에 의해 지정된 자 중 소속공무원을 제외한 주민자치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는 업무량과 근무시간 등을 감안하여 제3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해 수강료 징수액 중 일정금액을 봉사활동비로 지급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자치회관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해 운영비 등 필요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제30조에 의하여 징수가능한 수강료의 수입총액을 감안하여 적정 수준의 예산을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 구청장은 자치회관의 건전한 경쟁력 유도와 활성화를 위하여 프로그램 발표대회 및 작품전시회 등을 개최할 수 있으며, 행사의 운영비와 시상금 등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⑥ 구청장은 자치회관 운영실태를 평가할 수 있으며, 우수 자치회관에 대해서는 예산 범위내에서 시상할 수 있다.

⑦ 구청장과 동장은 관할 구역 내 자치회관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과의 연계방안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

제27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장의 의견을 들어 자치회관의 운영을 해당동 주민자치회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에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28조(자원봉사자) ① 구청장과 동장은 자치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하여야 한다.
② 자원봉사자는 자치회관의 운영을 직접 담당하거나, 보조 또는 강사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제29조(강사) ① 자치회관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강사는 자원봉사자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치회관의 운영내용에 따라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제30조(사용료 등) ① 자치회관의 시설 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수강료(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

- ② 제1항 중 사용료는 자치회관의 시설·장비 등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동장이 징수하며, 수강료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주민자치회에서 징수한다.
- ③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의 결정은 별표1에서 정하는 기준과 범위에서 사용료의 경우는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동장이 정하며, 수강료의 경우는 동장과 협의하여 주민자치회가 정한다.
- ④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은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 ⑤ 구청장은 제31조제1항에 의한 이용자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항에 의한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기준과 감면비율은 별표2와 같다.
- ⑥ 사용료 등의 반환은 별표3와 같이 한다.
- ⑦ 제2항에 의하여 주민자치회가 징수한 수강료에 대해서는 주민자치회가 동장과 협의하여 자치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그 수입·지출내역을 반기별로 반기경과 후 20일 이내에 공고·게시 등의 방법에 의해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 ⑧ 동장은 사용료의 징수·관리 등을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주민자치회는 수강료의 징수·관리·지출 등을 위하여 위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되, 수강료의 징수·관리·지출 등은 주민자치회 명의로 한다.

제31조(이용 등) ① 주민은 자치회관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 ② 자치회관의 시설 등을 이용할 때 주민은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③ 주민은 제30조에 따른 사용료 등의 징수대상 시설 등의 이용에 대하여는 사용료 등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 ④ 동장은 주민이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복을 위해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변상 또는 이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⑤ 구청장은 자치회관의 시설·장비의 노후 및 하자 등으로 이용자 또는 자원봉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시설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32조(주민참여) ① 구청장과 동장은 자치회관의 운영에 대한 주민 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 ② 관할구역 내의 주민이나 단체는 구청장 또는 동장에 자치회관의 운영에 대한 참여를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③ 참여의 요구나 의견제출이 있는 경우 구청장 또는 동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치회관의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33조(수당) ①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②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4조(보고)

- ① 동장은 매년 회계년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자치회관의 연간 운영계획을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동장은 제30조에 의한 사용료 등 자치회관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내역을 포함한 운영 결과보고서를 반기별로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반기 경과 후 2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7 장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

제35조(지방자치단체의 지원) ① 구청장은 주민자치회 구성원의 의욕 고취, 역량 강화 등을 위하여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해당 동 주민자치회는 구청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시책 수립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③ 구청장은 주민자치회가 제5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공간 지원 및 그 밖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④ 구청장은 교육, 자치계획 수립 등 주민자치회의 운영을 위해 지원조직을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조직을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36조(관계기관 등과의 협조)

- ① 주민자치회는 제5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 및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의 요청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고, 이와 달리 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주민자치회에 그 사유를 설명하도록 한다.

제 8 장 보 칙

제37조(감독) ①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에 위탁한 업무와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조사를 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제38조(보험) 구청장은 제5조의 기능을 수행하는 주민자치회 구성원이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를 대비하여 단체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제3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자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자치회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전부개정으로 이전 부칙 삭제-----

부 칙 <제1480호, 2021. 12.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회관 설치·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주민자치회 설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에 따른 주민자치회의 구성으로 기존 주민자치위원회 및 동 참여예산위원회는 폐지된 것으로 보며, 새로이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는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와 동 참여예산위원회의 목적과 기능 및 재산 등을 승계한다.

제4조(주민자치협의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주민자치협의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주민자치협의회로 본다.

제5조(자치회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회관 설치·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되고 있는 자치회관은 제23조에 따른 자치회관으로 본다.

부 칙 <제1588호, 2023. 7. 3.>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 12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670호, 2024. 5. 2.>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 18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712호, 2024. 11.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산동 주민자치회 운영세칙

2021.1.21. ~ 2.4.	내규수립 의견수렴	자치위원 온라인 설문
2021.2.5.	내규수립 내용	자치위원 워크숍
2021.2.15.	운영 세칙 초안 정리	운영세칙준비위원회
2021.2.19.	운영 세칙안 논의	운영세칙준비위원회
2021.3.4.	운영세칙 제정	주민자치회 정기회의
2022.3.15.	운영세칙 개정안 검토	주민자치회 운영진회의
2022.3.22.	운영세칙 개정안 의결	주민자치회 정기회의
2022.7.26.	운영세칙 부칙 개정안 의결	주민자치회 정기회의
2024.3.18.	운영 세칙안 논의	운영세칙준비위원회
2024.4.23.	운영세칙 개정안 의결	주민자치회 정기회의
2025.3.31./4.11.	운영세칙 개정안 논의	운영세칙준비위원회
2025.6.24.	운영세칙 개정안 의결	주민자치회 정기회의

2025. 6. 24.



구산동 주민자치회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산동 주민자치회 운영세칙

제정 2021. 3. 4.
개정 2022. 3. 22.
개정 2022. 7. 26.
개정 2024. 4. 23.
개정 2025. 6. 24.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운영세칙은 풀뿌리자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한「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40조(운영세칙) 규정에 따라 은평구 구산동 주민자치회 운영 및 자치회관 설치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운영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달성을 위해 구산동에 설치되고 주민을 대표하여 주민자치와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2. “주민자치회 위원”(이하“위원”이라 한다)이란 구산동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3. “주민총회”란 주민자치회 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기 위하여 해당 동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회의를 말한다.
4. “자치계획”이란 지역에 필요한 사업발굴 및 실행, 성과공유의 과정까지 동 주민자치회에서 추진하는 사항과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종합계획을 말한다.
5. “임원”이란 주민자치회 회의체계에서 선출된 회장·부회장·감사를 말한다.
6. “운영진”이란 제5호의 임원·사무국장·간사·분과위원장(또는 분과총무)를 말한다.
7. “고문”이란 구산동에서 선출된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과 구산동에 거주하는 비례대표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을 말한다.
8. “자치회관”이란 조례 제1조의 목적을 위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동에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편의시설과 그에 포함된 프로그램을 총칭한다.

제3조 (명칭) 본 회의 명칭은 조례 제4조에 따라 “구산동 주민자치회”(이하“주민자치회”라 한다)라 한다.

제4조 (소재지) 주민자치회는 구산동 주민센터 내에 둔다.

제5조 (기본이념) 주민자치회는 주민 누구나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지역 공동체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고 집행하며 책임지는 민주적 원리에 따라 운영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6조 (운영원칙) ① 제5조 기본이념에 따른 주민자치회 운영원칙은 조례 제3조에 의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 보장 및 자치활동 활성화
3. 지역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 및 지역문화 진흥
4. 주민 안전과 편의 증진 모색
5. 주민 화합과 세대통합 및 지역 간 협력 도모
6. 정치적·종교적·사적 이용 목적 배제
7. 지역사회 봉사 및 민관협력을 통한 지역발전 모색

- ② 주민자치회 위원 명단, 회의록, 재정 현황, 위·수탁 사업 등 주민자치회가 주관하는 모든 사항은 주민들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기능) 주민자치회는 조례 제5조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치계획 등을 세우고 이를 자체적으로 이행하는 업무
2.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등 행정사무 협의
3. 자치회관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등 행정사무의 수탁업무
(행정사무의 위수탁 계약 체결시에 한한다.)
4. 주민자치회의 자율적인 조직과 운영을 위한 업무
5. 동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관한 업무
6.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참여위원회와 연계가 필요한 업무
7. 그 밖에 주민의 자치소양 강화를 위한 교육 운영 등 위 각 호에 준하는 것으로 자치 활성화와 민관협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업무

제2장 주민자치회 위원

제8조(위원) ① 주민자치회 위원의 자격과 선정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② 주민자치회 위원의 모집공고와 인적사항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③ 위원중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 예비자가 있으면 그 순서대로 위촉하되, 예비자가 없는 경우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위원모집 절차에 따라 위촉한다.
- ④ 위원의 임기는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임기 종료 후 2년 이내에 위촉할 수 없다.

제9조(위원의 해촉) ① 주민자치회 위원이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통해 해촉할 수 있다.

1. 조례 제12조에 따른 위원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2. 주민자치회 정기회의에 특별한 사유 없이 연 3회 이상 무단 불참하는 경우
 3. 주민자치회 임원과 위원인 사무국장, 간사를 제외한 주민자치회 위원이 분과에 소속되지 아니하거나 분과 활동에 연 3회 이상 불참하는 경우. 단, 사전 통보 연간 2회 시 예외로 정한다.
 4. 범죄행위를 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기소되어 벌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
 5. 청탁·금품 수수 등의 비위행위로 주민자치회의 명예를 실추시킨 경우
 6. 자치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권한을 남용한 경우
 7. 반복적으로 여러차례 고성·욕설 사용 등으로 회의 진행을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경우
 8. 특정 위원을 사적인 감정으로 지속적으로 공격하는 등 주민자치회 운영에 지장을 주는 경우
- ② 제①항에 따라 해촉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며, 해촉 절차와 방법은 운영회의에서 결정하되, 주민자치회 정기회의 또는 임시회의에서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촉한다.
 - ③ 제①항에 따라 해촉된 사람은 해촉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재위촉할 수 없다.

제10조(임원 · 운영진 구성 및 임기) ① 다음 각 호와 같이 임원을 두며 임기는 선출된 날로부터 다음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1명
 3. 감사 2명2명(단, 사업감사와 회계감사를 통합하여 1명으로 운영할 수 있다.)
- ② 위 제①항이 규정하는 임원 외의 운영진 구성은 회장이 발의하여 주민자치회 정기회의 의결을 통해 다음 각 호와 같이 둘 수 있으며, 감사와 분과위원장의 임기는 선출된 날로부터 다음연도 12월 31일까지로, 사무국장의 임기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계약기간으로 한다.

1. 사무국장 1명, 간사 1명
2. 분과별 위원장(또는 총무) 각 1명

제11조(운영진 선출) ① 자치회장, 자치부회장 및 감사는 자치위원 중에 선출하되, 2명 이상 경쟁 시 무기명 투표에 따라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에 다수 득표자를 선출한다. 단, 1인 출마 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한다.

- ② 분과위원장은 해당분과에 소속된 자치위원 중에서 선출하되 2명 이상이 입후보 한 경우는 무기명 투표에 따라 다수 득표자가 분과장이 된다.
- ③ 사무국장·간사는 세칙 제19조, 제20조를 따른다.

제12조(임원 선출관리위원회) ① 임원선출의 선정절차 수행 및 관리 업무를 위하여 해당 동에 임원 선출관리위원회(이하“선출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② 선출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5명 이내로 구성한다.
 1. 전체회의에서 호선을 통해 위원 중 5인 이내로 구성한다. 단, 회장·부회장·감사 선출 입후보자는 임원 선출 관리 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2. 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할 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3분의 2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선출관리위원회에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두며, 선출관리위원회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 ④ 선출관리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감사의 후보 등록 및 정견발표, 투표방식 등의 일반적인 선거 기준에 따라야 하며, 투표 관련 시설을 설치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 ⑤ 선출관리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감사 선출이 완료될 때까지 존속한다.

제13조(회장 · 부회장의 임무)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고 주민자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모든 주민자치회의의 의장이 된다.

- ② 자치부회장은 자치회장을 보좌하며 자치회장 부재 시 자치회장 업무를 대행한다.

제14조(감사의 임무) ① 감사는 주민자치회의 사업과 회계를 포함한 운영 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회기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수시 감사를 할 수 있다.

- ② 정기 및 수시 감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자치회가 실시한 사업추진 내역
 2. 주민자치회 수입, 예산 지출 내역
 3. 그 밖에 주민자치회 활동내역 전반
- ③ 제2항 2호에 따른 예산 지출 내역의 대상은 주민자치회 보조금 예산으로 집행한 사업과 수익금·찬조금 집행 등에 한하며, 동 주민센터 일상경비 교부사업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수시감사가 필요할 때에는 감사 시작 30일 전에 자치회장에게 감사 기간을 알리고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운영진 해임) ① 다음 각 호의 경우 운영진은 세칙 제23조에 따라 정기회의에서 해임할 수 있다. 단, 제1항의 각 호에 해당되는 당사자에게는 1회 이상의 소명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1. 상당한 사유 없이 운영진회의 또는 정기회의에서 연 3회 무단 불참할 경우(단, 직계존비속 경조사 등 특별한 사유 발생시 예외)
2. 질병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이에 상응하는 범죄 행위를 범하였을 때
4. 도덕적으로 부적절한 행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본인 또는 주민자치회의의 품위를 손상시켰을 때
5. 주민자치회 운영에 피해를 입히거나 방해 또는 임무 태만 등의 민원발생으로 업무를 지속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6조(사임) ① 임원 또는 위원이 사임하고자 할 경우 사임서를 자치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임서를 제출한 즉시 사임한 것으로 한다. 단, 필요한 경우 임원은 업무인수인계서를 자치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임한 사람은 사임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재위촉할 수 없다.

제17조(궐위와 후임선출) ① 자치회장 등 궐위 시 다음 각 호에 따라 후임자를 결정한다.

1. 자치회장 궐위 시 조례에 따라 자치부회장이 신임 자치회장 선출시까지 남은 임기동안 자치회장직을 수행한다.
2. 자치회장 또는 부회장 궐위 시 30일 이내에 제12조에 따라 후임자를 선출하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이면 공석으로 둔다. 단, 후보등록 공고에 3회 이상 지원자가 없을 시에, 회장의 경우는 부회장이 남은 임기동안 자치회장직을 수행할 수 있고, 부회장의 경우는 공석으로 둘 수 있다.
3. 감사와 분과위원장 궐위 시 남은 임기에 관계없이 30일 이내에 제12조에 따라 선출하고 전임자의 남은 임기동안 그 직을 수행한다.

② 궐위된 임원에 대한 신임 임원의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

③ 회장과 부회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궐위로 인해 후임자로 선출된 경우도 이와 같다.

④ 회장과 부회장 모두 궐위 시에는 후임자가 선출되기 전까지 정기회의 또는 임시회의에서 업무 대행 수행자를 결정한다.

제3장 주민자치회 운영

제18조(사무국) ①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사무처리와 자치회관 위수탁 사업 등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주민자치회 내 사무국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사무국은 사무국장, 간사, 자원봉사자 등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③ 회장과 부회장은 주민자치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무국을 지휘 감독하여 주민자치회를 운영한다.

④ 사무국은 실무 진행시 해당 내용을 주민자치회 운영진 또는 위원과 공유하고, 필요한 경우 전체 회의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⑤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주민자치회 구성 및 운영, 역량강화 지원
2. 기록물 생산 및 보존
3. 예산, 회계 및 지출 실무
4. 정기회의, 분과회의 등 각종 회의 개최
5. 자치계획 수립 및 주민총회 개최
6. 주민자치회 사업 기획 및 실행 지원
7. 분과활동 활성화 및 운영지원
8. 그 외 주민자치회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한 업무 전반에 대한 지원 등

⑥ 간사·자원봉사자 등이 사임하고자 할 경우 사임서를 자치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임서를 제출한 즉시 사임한 것으로 한다. 다만 사무국장이 퇴직하고자 할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을 따른다.

제19조(사무국장) ① 사무국장은 간사 및 자원봉사자의 보조를 받아 주민자치회 운영실무를 총괄한다.

② 사무국장 채용 및 근로·배치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 및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구 채용방침 등을 따른다.

③ 사무국장은 근무상황부 및 시간외근무상황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근무상황부의 내용에 따라 급여를 지급한다.

④ 사무국장은 회장 및 운영진과 협의하여 구산동 주민자치회의 업무를 총괄 처리하며, 업무상황을 종합하여 상시 회장에게 보고한다.

⑤ 사무국장이 퇴직 등의 사유로 궐위될 경우, 모집 당시 예비자가 있으면 예비자 순위에 따라 채용하며, 예비자가 없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비공무원공정채용 규정」에 따라 후임을 채용하고 잔여 근로계약기간 동안 사무국장직을 수행한다.

- 제20조(간사)** ① 자치회장은 위원 중에서 간사를 선임 또는 호선할 수 있으며, 위원이 아닌 사람 중 선발할 경우에는 은평구 주민 중에서 공개모집한다.
- ② 간사는 주민자치회의 운영사무를 보조하며, 위원 관리, 각종 사업 및 행사 실행보조, 자료 정리 및 물품 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 ③ 간사는 활동기록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④ 해임 등의 사유로 결위 시에 자치회장은 간사를 새로 선임 또는 호선하여 남은 활동기간 동안 주민자치회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 제21조(분과위원회)** ① 주민자치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주민참여 확대를 위하여 분과를 구성한다.
- ② 분과위원회는 조례 제17조 2항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주민자치회 위원이 아닌 일반 분과원의 임기는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기와 동일하다.
- ③ 주민자치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사업 수행을 위하여 회장과 부회장, 사무국장·간사를 제외한 모든 위원은 필수적으로 1개 이상의 분과에 소속하여 활동하여야 한다.
- ④ 주민의 의견과 사업의 필요에 따라 적절하게 분과를 구성한다.
- ⑤ 분과위원회와 분과원 수는 제한이 없으나 분과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주민자치회 위원 5명 이상을 필수 구성으로 한다.
- ⑥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및 분과부위원장(또는 분과총무)을 선출한다.
- ⑦ 분과위원장은 분과회의의 의장이 되며, 분과의 각종 활동 및 분과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분과부위원장(또는 분과총무)은 분과위원장을 보좌하여 회의록 작성, 사업계획수립 등 분과운영 전반에 관한 행정업무를 수행한다.
- ⑧ 주민자치회원이 아닌 분과원은 연중 수시로 모집하며, 가입 시 가입신청서를, 탈퇴 시 탈퇴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분과회의, 사업 활동 등에 연 5회 이상 참여하지 않을 경우 탈퇴한 것으로 간주한다.
- ⑨ 분과위원회는 주민자치회 공동사업 및 해당분과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실행 역할을 수행한다.
- ⑩ 분과위원회는 해당 분과별 사업 실행뿐만 아니라 구산동 전체 주민자치사업을 함께 실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⑪ 분과위원회는 위원이 아닌 일반 주민이 실행사업 추진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회의) ① 주민자치회는 회의·회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회의를 둔다.

1. 정기회의
2. 운영회의
3. 민관협력회의
4. 분과회의
5. 주민총회

- ② 자치회장은 회의 종료 후 별도 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람하여야 한다.
- ③ 사무국장(또는 간사) 제1항의 1호부터 3호까지 회의 종료 후 회의록을 작성하며, 각 분과는 제4호의 회의 종료 후 분과장이 회의록을 작성하며, 정기·임시회의의 주요내용은 온오프라인을 통해 공개한다.

제23조(정기회의 및 임시회의) ① 주민자치회의 전체회의 정기회의는 매월 1회 개최한다. 다만, 필요시 주민자치회 의결을 거쳐 격월로 개최할 수 있다.

- ② 위 제①항에 따른 정기회의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운영세칙 및 세칙시행에 필요한 부칙의 제정, 개정 및 폐지
 2. 주민자치회 사업계획, 예산의 결정 및 변경
 3. 주민총회 개최 및 의제 확정 등 관련된 사항
 4. 주민자치회 사업·결산 및 감사 보고의 승인
 5. 위원의 위·해촉 요구 및 운영진의 선출·해임
 6. 분과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7. 안전의 의결사항(위임된 사항 포함) 중 집행에 관한 사항
 8. 운영진회의 및 분과회의에서 부의된 사항

- 9. 수입·지출 내역을 포함한 자치회관의 운영결과보고의 승인
- 10. 그 밖에 주민자치회와 자치회관의 운영 및 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항
- ③ 안건 심의는 제안자의 취지 설명을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다만, 분과 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하여는 분과위원장의 심사 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 ④ 주민자치회의 정기회의는 주민 누구나 참관 가능하다 단, 발언권은 갖지 않는다.
- ⑤ 임시회의는 조례 제18조 제1항에 따라 개최하며 운영세칙 제23조 제2항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제24조(운영진회의) ① 운영진회의는 매월 정기회의 개최 전 개최한다.

- ② 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임시 운영진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③ 운영진회의는 자치회장, 자치부회장, 감사, 분과위원장, 사무국장, 간사로 구성한다. 단 분과위원장 유고 시, 분과부위원장(분과총무)이 출석할 수 있다.
- ④ 운영진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하여 정기회의에 상정한다.
 - 1. 정기회의에 부의할 사항
 - 2. 동장 또는 분과위원회에서 부의된 사항
 - 3. 기타 주민자치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 4. 정기회의 의결사항(위임된 사항 포함) 중 세부 집행에 관한 사항
 - 5. 주민자치회 운영 및 분과별 진행과정 공유, 상호조정 및 협의

제25조(민관협력회의) ①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의 자치활동 지원을 위해 민관협력회의를 둔다.

- ② 민관협력회의는 동장, 팀장, 동 담당자, 자치회장, 자치부회장, 감사, 사무국장 등 주민자치활동을 지원하는 협력체계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 ③ 회의는 수시 또는 분기별로 개최하며, 동장 또는 자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개최할 수 있다.

제26조(분과회의) ① 분과회의는 마을의제를 실행하는 실질적 집행기구로 월1회 이상 개최한다. 다만, 필요시 주민자치회 의결을 거쳐 격월로 개최할 수 있다.

- ② 분과에서 결정한 사항은 매월 정기회의 개최 전 운영진회의에 부의한다.
- ③ 자치회장, 자치부회장, 감사, 사무국장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분과회의에 참석할 수 있으나 분과위원의 의무는 갖지 않는다.

제27조(주민공론장 및 성과공유회) ① 주민자치회는 의제 발굴 및 사업 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민공론장을 개최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주민공론장을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개최 일시와 장소, 목적 등을 동주민센터 홈페이지 및 자치회관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 주민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 ③ 성과공유회는 매년 12월 정기회의와 함께 당해 년의 주민자치회 사업 정리 및 평가, 차년도 사업안내도 포함하여 진행한다.

제28조(주민총회) ① 주민총회는 주민자치회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연 1회 개최한다. 다만, 필요시 주민자치회 의결을 거쳐 주민총회 개최 여부 및 개최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 ② 주민총회는 개최일 한 달 전 주민등록상 인구를 기준으로 하되, 13세 이상의 주(구산동 거주, 사업자, 단체소속 등 생활주민 포함)이면 투표에 참여할 수 있으며, 주민총회의 의결 정족수는 전체 주민의 0.5%(서면투표 등 사전투표 포함) 이상으로 한다.
- ③ 주민자치회는 각 분과위원회가 수립한 사업계획을 조정 협의한 후 자치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자치계획을 확정한다.
- ④ 주민총회 개최 1개월 전부터 홍보, 설명회, 사전투표 등을 진행할 수 있으며, 사전투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다.
- ⑤ 효율적인 주민총회 운영을 위하여 주민총회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 ⑥ 주민총회 준비위원회는 준비위원장 및 구성 인원, 업무분장, 역할, 운영기간 등을 정기회의 의결을 통해 결정하여 운영한다.

- ⑦ 주민총회 개최 시 거주지(사업장 소재지) 및 나이를 알 수 있는 참석자 명부를 작성한다. 단, 온라인 주민총회 시 온라인 참석자 명부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 ⑧ 주민총회는 주민자치회의 의결로 회장 명의로 소집한다.
- ⑨ 주민총회는 자치계획을 보고 받고,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자치계획을 결정한다.
- ⑩ 주민자치회는 주민참여율을 높이기 위하여 현수막 게시, 입주자대표회의 방송 등을 활용하여 적극 홍보한다.
- ⑪ 주민총회 상정 안건 홍보를 위한 물품을 제작하여 주민총회에 참여한 주민에게 배포할 수 있다.

제29조(회의 의결) ① 위원은 회장을 제외하고 1인 1표의 의결권을 갖는다. 다만 회장은 가부동수의 경우에 한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② 모든 회의는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0조(자치계획 수립) ① 사무국장은 11월 말까지 다음 연도 연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운영진회의에 보고한다.

- ② 운영회의는 분과별 연간 사업계획을 취합하여 다음 연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정기회의에 보고한다.
- ③ 분과의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 목적 및 추진방향
 2. 사업기간 및 소요예산
 3. 월별 추진계획
 4. 평가계획
 5. 예산 조달 및 집행 방법
 6. 홍보 및 협업, 주민 참여 및 타 단체 협조사항 등
- ④ 주민자치회 및 구청이 주관하는 정책공유회 및 사업계획을 심의할 때에는 단체별 중복된 사업과 동 전체로 확대해야 하는 사업을 찾아내어 통합하거나 확대할 것을 권유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을 확정한다.
- ⑤ 선정된 우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주관 단체에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장 예산 및 문서관리

제31조(사업비 관리) 주민자치회에 교부되는 사업비는 용도에 맞게 집행하여야 하며, 집행결과는 사업 종료 후 사업비 교부 기관 및 부서에 정산보고 하고 그 결과를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32조(재정) ① 주민자치회의 재정은 수강료, 교부금, 수익금, 수탁금, 찬조금, 기탁물품으로 충당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수강료는 자치회관 이용자에게 받는 프로그램 이용료
- 2. 수익금은 자치회관 운영 등에서 발생한 수익사업 예산
- 3. 찬조금은 사업 추진을 독려하고자 주민 등이 후원한 예산
- 4. 교부금은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받은 예산
- ② 주민자치회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반드시 재정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재정보증보험료는 주민자치회 예산에서 지출한다.

제33조(회계 및 지출) ① 제32조(재정)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예산은 주민자치회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금 하고 사무국이 관리하되, 매월 정기회의 시 수입·지출 내역을 보고한다.

- ② 회장은 주민총회 시 제32조(재정)에 규정된 수입 및 지출계획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34조(결산보고)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정기회의에 결산 보고한다.

제35조(회계연도) 주민자치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제36조(직인) ① 주민자치회는 업무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비치한다.

- ② 직인은 자치회장이 관리하며 직인대장을 비치하여 직인을 새로 하거나 고치거나 또는 폐기할 때마다 그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 ③ 회장이 사무국에게 직인을 관리하게 할 경우, 사무국은 직인 날인 사항을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7조(사무의 인계) ① 임원, 자치위원 및 간사의 임기 만료 또는 사임 및 해임, 사무국장의 퇴직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해당 업무의 진행사항과 관련 기록물을 정리하고 인수인계서와 함께 후임자 또는 해당 업무 대행자에게 인계하고 상호 서명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인계인수는 추진 중인 업무가 없거나 관리하고 있는 기록물 등이 없을 경우에는 시행하지 아니한다.
- ③ 인수인계 시점은 임기만료의 경우에는 새로운 임기가 시작되는 날에, 사임·해임 또는 기타 사유의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제38조(서류의 비치 및 보존) ① 주민자치회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 1. 위원 위·해촉·사임 대장
 - 2. 그 밖에 주민자치회 운영에 필요한 서류
- ② 주민자치회는 자치회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 1. 주민자치회 회의록
 - 2. 주민자치회 직인대장(주민자치회, 임원선출관리위원회, 위원선정관리위원회 직인)
 - 3. 문서접수 및 발급 대장
 - 4. 문서등록 대장
 - 5. 각종 회계장부
 - 6. 사업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 7. 주민자치회 운영에 필요한 서류
- ③ 주민자치회에서 작성한 서류는 공문서 관리규정을 준용하여 보관한다.

부 칙 (2025. 6. 24.)

제1조(시행) 본 운영세칙은 주민자치회의 정기회의를 거쳐 승인받은 날 2025. 6. 24.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내규) 운영세칙에 포함되지 아니한 주민자치회 관련 운영 사항은 내규로 정하고 내규는 주민자치회의 의결로 정하며 이외의 사항은 일반 민주주의 정신에 따른다.

제3조(경과조치) 주민자치회는 조례 전면 개정에 따라 운영세칙을 개정한다.

제4조(회비) ① 회비는 매월 10,000원으로 정하되, 납부계좌로 월납, 분기납, 반기납, 연납으로 할 수 있다.

②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비를 집행할 수 있다.

1. 민관협력 행사 (마을 축제, 체육대회, 자매 결연지 방문, 적십자 성금,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 장학금 지급 등) 시 단체 경비로 지급한다.
2. 애경사에는 현금 100,000원 (또는 상당의 화환)을 지급 한다. 단, 위원 2년 임기 중 1번을 원칙으로 하며 직계가족 (부모,자녀) 및 배우자에 한함. (※ 부모에는 배우자의 부모 포함)
3. 경상비로 처리할 수 없는 사업비 (착불을 포함한 택배비, 세탁비, 수수료 등) 현금성 경비
4. 정기회의 식비(1인 9,000원) 및 분과회의 식비(1인 9,000원) 초과분에 대해 집행할 수 있다. 단, 초과분은 50% (1인 4,500원)로 제한하며 분과회의는 사업계획서에 맞춰 횟수 제한을 둔다.

③ 신규 위원은 위촉된 달로부터 회비를 납입하며, 회비 납입 위원은 기존 위원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④ 위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기 납부한 재정 등은 주민자치회 발전을 위하여 기부한 것으로 간주한다.

⑤ 경미한 지출 및 자치회장이 필요하다고 결정되는 사항은 선 결제 후 주민자치회에 보고한다.

⑥ 국가적 재난이나 긴급상황 발생 시, 운영진 회의를 거쳐 선 지출 후 주민자치회에 보고한다.

⑦ 회계연도가 끝나면 잔액에 대해 소진을 원칙으로 한다. (기부, 후원, 자치위원에 대한 답례품 등)

⑧ 회비는 매월 정기회의에서 보고하며 매년 12월 별도의 감사를 거쳐 보고한다.

함께 만들어가는 구산동의 내일!

2025년 구산동 주민자치회 자치계획 결과보고서

발행일 2025년 12월 31일

발행처 구산동 주민자치회